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김달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124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3월 10일

발 의 자 : 김달호, 권영희, 김혜련,
문영민 의원(4명)

찬 성 자 : 김정태, 김태수, 김희철,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송아량, 이영실, 이정인,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14
명)

1. 제안이유

- 2020.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임을 명시하였고, 2019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대북 지원사업자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음.
- 2004. 7.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인도주의에 바탕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보편적 인도주의와 서울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도협력사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대북 인도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도협력사업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인도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김달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124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3월 10일

발 의 자 : 김달호, 권영희, 김혜련,
문영민 의원(4명)

찬 성 자 : 김정태, 김태수, 김희철,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송아량, 이영실, 이정인,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14
명)

1. 제안이유

- 2020.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임을 명시하였고, 2019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대북 지원사업자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음.
- 2004. 7.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인도주의에 바탕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보편적 인도주의와 서울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도협력사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대북 인도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도협력사업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인도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포애를 증진하며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도협력사업”이란 인도주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에게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인도적 지원과 구호 및 개발협력 사업을 말한다.

1. 긴급구호와 피해복구 지원사업
2. 보육 및 보건의료협력사업
3. 환경보전, 기후변화 및 산림협력사업
4. 농수산협력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기본원칙) ① 인도협력사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하는 인도주의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인도협력사업은 정치·사회·군사적 상황과 연계하거나 그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고 인도성, 공평성, 중립성, 독립성과 같은 보편적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의 인도적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과 시 및 북한 상호 간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인도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도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및 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도협력사업을 인도주의의 원칙과 절차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시민 및 북한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도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인도협력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도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도협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도협력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와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2. 인도협력사업 환경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인도협력사업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인도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인도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도협력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도협력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2. 인도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도협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도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도협력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인도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인도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협력체계가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도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 중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을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도협력사업”으로 한다.